-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98호

2021. 5. 12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26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30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
2021. 5. 12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안전교통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하고, 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를 정함.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
○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함.(안 제7조)

○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, 각 재난별 편성기준과 업무 등을 정함.(안 제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)

○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○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파견근무자의 복무와 사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13조, 제14조)

○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의 지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)

○ 본부장은 관계 기관과의 홍보 연락망 개설과 정보공유·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, 위기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6조,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○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「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관한 조례」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

관한 사항 총괄·조정,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 세부적으로 상세히 규정함.

- 안 제4조는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사항으로 총괄조정관 또는 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나,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5조는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을 수습하는 실무반의 편성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직무대행에 관한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과,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에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에서 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 기준으로는 별표2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상황별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하였으며, 자연재난에 따른 편성기준은 별표 3으로, 사회재난에 따른 편성기준은 별표 4로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별표 5로 규정함.
- 안 제9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의 파견, 복무, 사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이 재난현장의 수습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재난관련 정보 공유·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 하였으며, 재난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기경보의 발령을 요청토록 규정함.

○ 참고로 본 조례안은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」 제2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3조부터 제 22조까지에 있는 조항을 삭제 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하는 지침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